

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3. 2. 15.(금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김대회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7차 및 제8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6]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-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서울지역 27개 SO - (2013-09-021)

- 손승현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의거,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지상파방송(OBS)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건에 대해 원안대로 유효기간 만료일자를 2016년 2월 18일로 하고 승인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(승인내용)

승인대상 SO	재송신 대상	재송신 지역	재송신 유형
서울지역 총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*	OBS 방송 (아날로그, 디지털)	서울특별시 (해당 SO 방송구역)	동시재송신

* 서울지역 총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: 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, (주)티브로드종로중구방송, (주)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티브로드서대문방송, 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, 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, (주)티브로드동대문방송, (주)씨엠비동서방송, 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, 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, (주)티브로드노원방송, 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제이헬로비전,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엠비한강케이블티브이, (주)현대HCN동작방송, (주)현대HCN, (주)현대HCN서초방송, 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

나. (주)호반건설의 (주)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에 관한 건
- (2013-09-022)

- 손승현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(주)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(주)호반건설에 대한 처분을 심의한 결과,
- (주)호반건설이 신청한 (주)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건을 심사처리하되,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승인시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- 아울러, (주)호반건설 및 (주)광주방송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하고, 전체 민영방송사(최다액출자자 포함)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 안내조치를 병행하기로 함

※ (주)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계열사간 합병에 따라 (주)호반건설산업(소멸회사)에서 (주)호반건설(존속회사)로 변경('12.12.17, 흡수합병) 되었으나,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함

다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3-09-023)

-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FTA 이행법률 정비, 알뜰폰(MVNO) 활성화,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운영기관 근거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 내용

① 한·미/한·EU FTA 후속조치

-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상대국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국인의제법인 적용에서 제외하여 100%까지 간접투자 허용(KT·SKT 제외)
-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소속 외국인의 경우 방송중계용 국제위성 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협정 체결 및 방통위 승인절차 면제

② 알뜰폰(MVNO) 활성화

-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일몰을 3년 연장하여 '16.9.22일 까지로 함
-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·도난 단말기에 대한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·조작행위를 금지함

③ 통신이용 복지 및 안전 증진

- 통신중계서비스의 위탁운영기관 지정과 정부지원 및 사업자 비용분담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함
- 방통위가 국가기관·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행정정보(예:주민등록정보)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, 이를 통해 기간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④ 기타 규제완화 및 현행법의 미비사항 정비 등

- 국제로밍서비스의 요금정산 협정체결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
- 내부지침인 훈령으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(裁定)규정을 고시로 상향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

o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주요 의견 검토결과

-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을 고려 시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불필요
: 제도 적용기간이 2년 2개월('11.7월 ~ '13.9월)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
- 가입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시 과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'사업자등록'에 관한 정보제공 곤란

: 사업자등록 일치여부만 확인하므로 과세정보라 보기 어려움

○ 향후 일정

-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: '13. 2월 ~ 4월
- 차관·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: '13. 5월(예정)

라. (주)미디어크리에이트의 이사회 개선방안 승인에 관한 건 - (2013-09-024)

- 김광수 방송진흥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미디어크리에이트의 허가조건에 따른 이사회 구성 개선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(이사회 구성 개선방안)
 - 방송사의 미디어랩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SBS와의 특수관계 이사수를 5명(허가당시)에서 3명으로 축소
 - 지역민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사 1명을 새로이 선임

< 참고 : 미디어크리에이트 이사회 구성(안) >

SBS, 미디어크리에이트 총괄사장, 미디어크리에이트 영업담당사장, 지역민방(1명), 일본 주피터텔레콤, 한동대교수(김재홍, 사외이사), 인하대교수(김상훈, 사외이사)

- ※ 미디어크리에이트는 3월 정기 주총을 통해 이사회 개선방안 처리 예정
- ※ 주주구성 : SBS(40%), 일본 주피터텔레콤(20%), 지역민방(18%, 9개 민방별 2%), 다음(10%), 씨유미디어(5%), 해덕스틸(5%), 소액주주(2%)

마. 「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」 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3-09-025)

- 박윤현 전과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과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 관련고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(용어정의 추가) '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'의 용어 정의 신설
 -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매출액 이외의 간접적 이익을 발생 시킨 경우에 부과하는 할당대가를 말함

② (할당대가 산정방식 변경) 해당 할당대가 산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

○ **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** = 해당연도 할당받은 주파수 할당대가(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(x) +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(y)) × 다른 용도로 인해 발생한 해당연도 트래픽 비중

※ 다른 용도로 인해 발생한 연간 트래픽 비중 = 다른 용도로 인해 발생한 해당연도

트래픽 ⇨ 할당받은 주파수로 인해 발생한 해당년도 총 트래픽
(단, 트래픽은 역무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정보전송량)

③ (역무구분 폐지) 전파법시행령 규정에 일치하도록 이동통신의 세부 역무구분 폐지

- 이동통신(셀룰러, PCS, IMT2000, IMT) → 이동통신

④ (매출관련 시장계수 조정) 지상파 LBS(위치기반서비스) 시장의 예상매출 관련
시장계수(x)와 실제매출 관련 시장계수(y) 값 조정

- 신규 사업자 진입비용 완화 차원에서 $x = 2\%$, $y = 1\%$ → $x = 1\%$, $y = 2\%$

㉚ 보고사항 : 없음

㉛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○ 별도 통지키로 함

6. 폐 회 (10:35)